

聽講生제도는 制限되어야

劉奉鎬
(梨花女大 教育學科)

1. 머리말

대학의 일반 學部에 정규 학생 이외의 청강생을 수용하는 제도를 확충함으로써 개인의 學究的 要求나 必要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나아가 대학교육의 社會的 需要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위 聽講生制度의 擴充 導入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이에 반하여 정규 대학교육의 質 향상 내지 秀越性 확보, 그리고 과거 '60~'70년대에 청강생 제도가 야기 시킨 사회적 불의와 대학 교무 행정의 문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80년대 이후 청강생 제도를 替換할 수 있는 많은 高等教育機關이나 社會敎育機關이 定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학교육開放이라는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청강생 제도의 擴充이 지니는 의의가 극히 감소된다는 이유에서 이 제도가 制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聽講生制度에

대한 贊反 의견들은 大學敎育의 機會를 어떠한 방법으로 넓히느냐 하는 觀點의 차이와 청강생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解釋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필자 나름대로 聽講生의 개념(성격)을 정의하고 이에 비추어 청강생 제도를 검토하면서 일반大學 學部課程에서의 청강생 제도 도입을 反對하는 입장에서 所信을 피력하고자 한다.

2. 聽講生의 概念

일般大學 學部에서의 聽講生이란 ① 대학의 正規학생이 아닌 자가 그의 必要나 要求에 따라 大學에서 개설한 特定科目受講을 신청하는 경우, ② 大學 해당 과목의 收容能力이 협용되었을 때 大學當局의 허락을 받고, ③ 講義擔當 교수의 승인 하에 해당 科目의 강의를 듣는學生이라 할 수 있다.

聽講生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正規學生과 같이 한 學期에 많은 학점(18학점 이상)을 受講申請할 수는 없어서 1~2 과목 수강하게 된다. 청강생으로 承認되어 수강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學歷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따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필수적인 것은 그 講義를 듣고 있는 정규 학생과 거의 같은 수준의 學力を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처음부터 그 강의를 소화해 낼 수 없을 缺格要因이 있다면 당초 소기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講義進行에 있어서 청강생이 障碍要因이 될 수 있다.

청강생은 해당 과목을 履修한 후 評價에서 합격하였을 때 해당 과목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이수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聽講生으로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였다 하여 卒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學部 聽講生制度를 制限해야 할 理由

學部에서 청강생 제도를 체택함으로써 大學教育을 널리開放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良質의 教育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원칙론에는 이의가 없다. 다만 청강생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도 대학에서 실시하는 公開講座, 대학 부속 平生敎育院 등에서 필요한 教育을 받을 수 있게 된 오늘의 상황에서 이러한 要求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는가? 또한 聽講生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한국의 大學에서 청강생 제도를 公式化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是非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現 制度下에서 聽講生制度가 과도한 擴大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각 대학의 學則에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聽講生制度를 의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외국 대학과 交換學生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 외국인 학생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聽講生으로 수강하는 사례

가 있다.

또한 각 대학의 學則에는 공통적으로 '公開講座'를 개설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각 대학에서 公開講座를 社會的需要나 學問的普及을 위하여 다양하게 개설할 경우 이 講座를 청강할 필요나 요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聽講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公開講座를 수강하는 사람은 넓은 의미의 청강생이다.¹⁾

공식적 청강생 제도는 1980년까지는 각 대학 學則에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1년 졸업정원제가 실시되어 大學定員이 대폭 증가하면서 이 규정은 모두 刪除되었다.²⁾ 이 시기에는 大學定員이 급증하여 대학의 施設이나 人的資源이 청강생을 받을 만큼 여유가 없었고, 또 그 당시 청강생 제도가 과행적으로 운영되어 社會的物議를 일으킨 점이 많았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둘째, 일반 正規大學 이외에 大學水準의 교육기관(放送通信大學, 開放大學, 專門大學短期課程 등)이 量的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반대학에 進學하지 못한 사람들이 職場生活을 하면

서도 大學課程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따라서 일반대학에서 굳이 청강하지 않고도 學問的 要求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대학은 1972년에 발족하여 현재는 專門大學課程과 大學課程에서 다양한 專攻學科를 설치하고 있으며 점차 學科를 증설하고 學生數도 증가하고 있다. '80년에 학생 수 32,053명이던 것이 '85년부터 증가하여 '90년 현재 148,65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현재 國語科·英語科·中國語科·佛語科·初等敎育科·幼兒敎育科·法學科·行政學科·經濟學科·經營學科·農學科·家政學科·電子計算學科·敎育學科 등에서 20~40세 이상까지 광범위한 연령층의 職場人과 학생들이 勉學하고 있다. 이 대학에서 수업은 연간 4주간出席講義와 우편을 통한 課題의 添削指導가 있기는 하지만 매일 매일 放送授業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 대학 학생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방송 수업을 聽講할 수 있다.

또한 1984년부터 開放大學이 설립되어 產業界, 특히 工業系 직장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넓혀

- 1) · 서울대 학칙 제15장(공개강좌·야간수업·계절수업·연수연구원·외탁생·외국인 학생 등). 제98조(외탁생) ① 정부 각 부처 제작자로서 그 소속 장관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에 한하여 정원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탁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정의 시험을 거쳐 수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이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0조(공개강좌) : 본교에 공개강좌를 들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이화여대 학칙 제14장 공개강좌, 제64조(공개강좌 개설) : 실무,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본교에 공개강좌를 들 수 있다. 제65조(공개강좌의 과목 등) : 공개 강좌의 과목·시간·장소·수강자격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2) 1981년에 삭제된 이화여대 청강생에 관한 학칙 내용 : 제66조(청강생) ① 총장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대학장의 의견을 들어 청강생을 받을 수 있다. ② 청강생의 자격·등록·수업·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주고 있다. '90년 현재 서울산 업대·부산공업대·대전공업대·광주대학교(開放制)·경북산 업대·전북공업대 등에서 51, 970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것 은 基幹學制의 一般大學에 진 학하지 않고 職場生活을 하면서 大學教育을 받고자 하는 사 람들에게 機會를 갖게 한 제도 이다. 따라서 '70년대 이전과 같은 聽講生制度의 切實性은 감소된 것이다.

셋째, 社會教育法 (1982. 12. 31, 법률 제3648호), 社會教育法施行令(1983. 9. 10, 대통령령 제11230호) 등이 시행됨에 따 라 누구든지 社會教育團體 또는 社會教育施設을 설치하여 社會 教育活動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법 제24조의 “① 大 學·師範大學·教育大學 및 專門大學은 당해 大學의 特性에 맞는 社會教育을 實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각 대학 에서 平生教育院이 설치·운영 되고 있다.

'70년대 우리나라 大學 開放 education의 特性은 教養·農業·市 民 教育을 위해 地域社會와 대 학의 共同努力으로 短期的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大學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成人을 위한 大學 開放教育을 확대시키기 시작하였다. 각 대학은 平生教育院, 社會教育院, 平生教育研究所, 社會教育研究所 등 의 형태로 대학 개방교육을 전 담하는 機構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1984년에 설립된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을 비롯하여 덕성여

대 평생교육원, 숙명여대 평생 교육원, 명지대 사회교육원, 한 양대 평생교육원, 대구대 평생 교육원, 순천대 영농교육원, 홍 익대 미술교육원, 한남대 사회 교육원, 전북대 사회교육연구소, 울산대 평생교육연구소 등이 바로 대학 개방교육을 전 담하는 기관들이다.

각 大學別 開放教育機關의 교 육 특징을 간략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화여대 평생 교육원은 教養 및 專攻教育 강좌, 生活外國語 강좌, 카운슬리교육 프로그램, 職業再教育 프로그램과 研修 프로그램, 勤勞女性 교양 강좌 등의 課程을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여 普·夜間 또는 季節制로 개 설하고 있다. 덕성여대 평생 교육원에서는 正規大學의 4년 과정을 2년으로 축소하여 教育課程을 구성하고 있으며 綜合教養課程, 專攻課程, 讀書討論課程, 一般選擇課程 등이 普·夜間으로 운영되고 있다.

숙명여대 평생교육원은 博物館大學이 확대 개편된 것으로서 교양교육 과정 중심으로 운영 되고 있는데, 歷史나 美術 분야에 치중하여 주간 과정으로 講座가 개설되고 있다. 한양대 평생교육원도 교양교육 프로그램,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건강 및 보건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익대 미술교육원은 홍익대 가 美術文化의 研究와 教育에 先導的 역할을 한다는 특성을 살려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美術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普·夜間으로 미술 일반과정, 전

공과정, 전문과정, 실기과정 등 을 단계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다. 명지대 사회교육원에서 는 기독교교육, 반공교육, 실 무교육(문예창작·법학·행정·부역·경영·가정 등) 과정으 로 나누어 普間에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울산대, 영남대, 전 북대, 한남대, 경성대, 상지전 문대 등에서 主婦大學講座, 女性大學, 女性講座 등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의 자발적인 시도 이외에 대학 개방교육이 확산되면서 政府나 기업체 등 의 外部機關에서 대학의 專門的能力에 대한 요청으로 직원 들의 再education을 위해 대학에 開放education機關을 설치하여 委託教育을 실시하게 된 것도 大學 開放education 發展에 또하나의 중요 한 계기가 되고 있다. 總務處와 한국무역협회의 요청으로 해외파견 공무원, 무역·기술 요원의 外國語教育을 담당하는 한국외대 外國語研修院과 대우 그룹의 위탁으로 기능공들에게 工科大學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아주대 產業education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형태의 大學 開放education의 특징은 職業의 必要에 의해 再education 및 專門教育을 시도하는 것으로서 正規大學의 學點 및 學位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직장 자체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교육 결과를 人事管理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社會education의 일환 으로서 대학의 開放education은 大學講座를 일반市民에게 공개 하는 것으로서, 각 學科別 專

攻과 같이 專門的・集中的으로 교육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學習하는 사회(learning society)로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대학에 附設된 社會教育機關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대부분 대학의 중진·중견 교수이거나 그 분야의 중진 전문가로 구성되고 있어서 굳이 學部의 正規講座를 聽講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넷째, 大學 學部課程에 聆講生을 일정 범위 이상으로 수용할 경우 현재 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秀越性 確保에 장애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대개 教育施設이 부족하고 教授確保率이 基準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과다한 실정이다. 여기에 聆講生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학생들의 能力에 맞는 專門的 指導가 부실해지기 쉽다. 더욱이 聆講生이 그 과목을 수강하는데 필요한 學問的 資質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도 무의미한 수장이 될 뿐만 아니라 강의실의 학습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고, 나아가 正規學生과 聆講生 사이에 위화감마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때 大學教育의 秀越性은 보호되기 어렵고, 도리어 教育의 質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다섯째, 현재 學部에서 청강생을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외국 대학과의 교환학생 제도) 이

외에도 聆講生制度를 확대한 때 자칫 과거 '60~'70년대 우리나라 대학들이 범한 聆講生制度의 번창 운영의 소지가 있다.

원래 聆講生은 자기 일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1~2 과목을 청강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 聆講生制度는 본래의 機能을 다하지 못했었다. 청강생 제도는 능력 부족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이 定員外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大學生이 될 수 있게 하는 大學入學의 方便은 아니다. 그런데 지난 '60~'70년대에 우리나라 대학의 청강생들은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난 定員外 大學生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행적인 聆講生制度는 大學教育의 質을 저하시켰으며 여러 가지 社會的 物議를 야기시켰다. 물론 공식적으로 인정된 제도는 아니었지만, 한동안 大學 教務行政에 큰 혼란을 가져 왔던 사실을 상기하여야 한다.

4. 맷는 말

現代社會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大學은 그 나름의 전통과 基本機能을 유지해야 하는 한편으로 社會와의 관계에 있어 점차 새로운 기능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대학 기능의 변화 과정에서 근래에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大學 開

放教育의 기능이다.

대학이 正規學生이 아닌 일반인에게 公開講座, 通信教育 등의 방법으로 대학교육을 개방·확대시키거나 여러 現實的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계획과 실천에 대학의 人的·物的 資源을 활용하는 것은 대학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로 普遍化되고 있다. 그러나 大學의 開放教育이 곧 學部課程에서 聆講生制度를擴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우리나라 대학의 學部課程에서는 聆講生制度를 制限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① 각 대학들은 공통적으로 공개강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② 傳系學制에서 放送通信大學, 開放大學 등이 확충되어 가고 있고, ③ '80년대 이후 社會教育法과 社會教育法施行令에 따라 각 대학에서 平生教育院 또는 社會教育院 등을 운영하고 있어서 基幹學制의 大學生이 아닌 직장인들이 그들의 필요나 요구에 따라 修學 또는 聆講 할 수 있는 門戶가 개방되어 있으므로 聆講生制度를 확충할 필요성은 적어진 것이다. 그리고 學部課程에서 聆講生이 증가될 경우 大學의 秀越性 確保 기능에 逆作用의 要因이 될 뿐 아니라 과거 '60~'70년대에 만연한 聆講生制度의 번창 운영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聆講生制度는 制限되어야 한다. ■